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 582,74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대 전 지 방 법 원 천 안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582, 74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이동원, 신태훈(기소), 류정인(공판)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9. 1. 6. 02:58경 당진시 B빌딩 C호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시간 5분에 걸쳐 신음소리를 내고 "보지, 자지를 빨아줘, 빨아봐"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통신매체이용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 9.8.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직업, 연락처,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그 사유와 변경내용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촬영에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인 제출 증거(발신번호 표시제한 수신목록)

「2019고단74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신상정보제출서
-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내용,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범행으로 피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 무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한대균